

## 일반 독일어 단체반 수업에 대한 계약조건

1. 수업료에는 강의비, 장소제공과 행정 사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처음에 입학할 때 추가해서 등록비를 25 €를 받으며 이것에 복사비, 증명서, 시험과 졸업 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교재는 학생들이 사야한다.
2. 처음 각 수업을 신청할 때 선불로 125 €를 내야 한다. 이것은 만약에 분할금을 낼 때에 마지막 분할금에 계산된다. 이 선불금은 각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보증이며 이 요구는 수업 신청자가 수업 처음 시작 때에 출석치 않으면 소멸된다.
3. 수업료(- 선불), 분할금은 늦어도 처음 수업 시작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한다. 분할금은 배우고 있는달 4번째 주에 다음달 것을 내야 한다.
4. 강의 기간은 4주이며 1개월 전체가 아니다. 수업은 휴일이나 축제일은 쉬며 보충되지 않는다. 예외는 한달 강의 중 2일 이상 휴일인 경우이다.
5. 만약에 단체반 수업이 참가학생 수가 적어서 수업 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같은 가격의 학생수가 적은 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납부된 선불은 바로 돌려 받는다.

가정해서 한 반에 참가한 학생수가 4명보다 적으면 효과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간을 적게 한다(예: 3명 = 12 수업시간, 2명 = 8 수업시간). 가정해서 한 반에 9명 이상이면 효과가 적은 수업인 것을 인정하여 학생들과 상의하여 수업시간을 늘린다.(15분 매일 추가된 인원수)

- 6.a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하면 해약금으로 입학금의 20%, 적어도 125 €를 받는다. 만약에 해약이 6.b에 해당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금액에 준한다.
- 6.b 해약은 계약기간 중에는 원래 할 수 없다. 예외로는 학원에서 학생이 원하면 허락할 수 있다.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4주이며 법적요구는 없다. 해약금은 수업료(입학금)의 20%에 해당되며 적어도 125 €이다. 예로 비자를 받지 못했거나 연장하지 못한 경우, 사망, 병환, 임신, 먼 곳으로 이사,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며 해약은 서면으로 하고 의사의 증명서, 대사관이나 해당관청의 서류를 첨부한다.
- 6.c 수업의 날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하다. 수업시작(예약된) 1주일전에 통고한 경우이며 서로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관계자의 이름과 날짜와 수업시간을 적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달의 수업료를 계산한다.
7. 독일어 수업신청 시에 원하는 학생에게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증명서는 강의 시작하는 달에 240 € + 25 €를 낸 학생에 한한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예로서 비자문제가 있을 경우 수업을 나중에 받거나 수업신청을 적어도 수업 1주일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6번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치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8. 학생이 수업시간에 한번이나 여러 번 출석 않은 경우 수업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9. 모든 수업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학의 어학시험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외국어통신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다. 개인수업이나 회사를 위한 수업은 부가가치세 19%를 추가한다.
10. 만약에 수업이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에 책임 지지않는다.

입장: 1월 2009년